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57
----------	------

제출년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최근배, 최용수, 강명권 의원

1. 제안이유

- 소중한 생명이 가족해체와 사회의 다원화,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생명이 소모품으로 전락되어 갈수록 삶을 포기하는 자살이 늘어나고 있어 자살에 대한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대책 마련으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조)
-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7조)
-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안 제8조)
-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안 제9조)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2012. 10. 31 ~ 11. 20) : 의견없음
- 조례안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죽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 시도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 충주시장(이하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사상의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시책
4.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과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과 보호업무 관계자·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